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 관련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검사 근거 마련〉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21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2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검사 근거 마련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2025. 6. 11.

다. 회 부 일: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등록 취소나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35조 및 제78조).

Ⅲ. 검토의견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제35조제1항제9호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u> <u>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u> <u>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u> <u>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u> <u>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u> <u>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u> <u>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u> <u>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u>

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그런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에서 제외되고 있어¹⁾, 불법카메라 설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곤란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한 자가 해당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관광숙박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은 주거지역·주택에서 숙박을 제공한다는 특성상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대하여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8조제3항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78조(보고·검사) ①·② (생략) <u><신설></u>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78조(보고·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u>

③ (생략)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u>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 사에 따라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 ----- ----- -----.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조항 신설에 따라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이 설치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사례와 같이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시 경찰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법률명	내 용
공중위생 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②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u> ③ <u>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농어촌 정비법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통보·보고 및 출입·검사)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86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u> ④ <u>제3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은 주거지역·주택에서 숙박을 제공한다는 특성상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